

# 건설공사 노무제도 및 실무 ③

글 쓰는 순서

- I. 문제제기
- II. 설비건설업과 주요 노동관계법률과 제도
- III. 건설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보호제도  
..... 9월호
- IV. 건설현장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이번 호
- V. 기타 전문건설업 인사노무관리 실무쟁점사항  
..... 다음 호

대한설비건설협회 각 시·도회는 최근 개정, 시행되고 있는 건설 노무관련제도와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등 사회보험 실무에 대해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무강습회를 실시했다.

이 강습회에서 서울특별시회 자문 노무사이자 노무법인 한길 본사 대표인 신흥식 노무사가 사회보험실무와 최근 개정 시행 중인 노무제도 등을 강의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동안 회원사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설명했다. 본지는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습회 자료로 사용한 건설공사 노무제도 및 실무 내용을 게재한다.

## IV. 건설현장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자격관리문제는 오래된 숙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미 고용·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1월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법' 이라 함) 제22조 (건설공

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⑤항에서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원가에 노무비에 상응하는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식적으로는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자격취득관련 자료 및 국제청 세무관련 자료를 통하여 일용근로자 근무실태 내지 소득 파악이 용이하게 되었고, 공사금액에 사회보험료를 포함하게 되어 있어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 의한 보험료 추징명분이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공공공사의 경우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4대사회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사후정산제도와 일용근로자의 자격취득·상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1. 사회보험사후정산제도 개요

사후정산제도는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내에서 기성금 지급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임.

사후정산제는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가 2006.12.29. 개정되었으므로, 개정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음(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입찰·계약 및 최초 기성대가 지급 등 소요기일을 감안, '07.4월경부터 적용).

사후정산제는 정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에 적용되고 있으며, 공공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업체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확보를 위해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별로 실제 노무비수준의 적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후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하며, 기성청구시 전월의 보험료 납부영수증(보험료납입증명서)을 첨부해 보험료를 지급받음.

		적용제외 근로자	
사회보험	고용	자격관리 : 사업주 보험료 : 원수금인	65세 이상, 월 60시간 미만
	산재	보험료 : 원수금인	적용제외 없음
	국민	자격관리 : 사업주 보험료 : 사업주	1월미만 일용, 18세미만 60세이상, 월 80시간미만
	건강	자격관리 : 사업주 보험료 : 사업주	1월미만 일용, 월 80시간미만

건설일용근로자 적용방안<sup>53)</sup>

구 분	국 민 연 금	건 강 보 험
사업장 적용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연적용해당신고서, 일괄경정고지신청서, EDI 가입신청서 제출</li> <li>- 사업장 최초 적용신고는 각 공단(국민연금/건강보험) 지사에 우편, FAX, 방문하여 공통신고하고, 가입 이후부터 반드시 EDI로 신고</li> </ul> </li> </ul>	
보험료 정기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월 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사업장에 고지서 송달(매월 22일경)</li> <li>- 사업장에서는 고지내역서를 확인하여 가입자 변동내역 신고</li> </ul>	
가입자 신고 (취득/상실/소득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자 취득/상실신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월간 20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또는 20일미만 근무하거나 퇴사하게 된 때</li> <li>• 소득변경신고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전월보다 높거나 낮을 때</li> <li>• 반드시 EDI로 신고하되, 다음달 5일까지 신고(휴일인 경우 전날)</li> <li>※ 가족중 건강보험 피부양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취득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월부터 퇴사월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월의 다음달부터 퇴사월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li> </ul>
일괄경정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매월 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사항을 기초로 일괄 경정고지 후 EDI로 전송</li> <li>• 사업장에서 매월 6일 EDI시스템에서 일괄경정고지 내역서 수신 후 경정고지금액으로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납부(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 납부</li> <li>* 국민연금보험료 전자납부는 5월부터 가능</li> </ul> </li> </ul>	
수시경정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의 일괄경정고지 전·후에 사회보험 사후정산을 위해 부득이 보험료납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괄경정고지금액이 상이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 납부기한일의 1일전까지(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li> </ul> </li> <li>• 경정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료 납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DI 시스템에서 신청</li> <li>• 반드시 "가상계좌"로만 납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사에 내방(유선)하여 신청</li> <li>• "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납부</li> </ul>
보험료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 납부기간 : 매월 7일 ~ 10일(휴일인 경우 다음 날)</li> <li>• 건설현장 사업장은 공단의 일괄경정고지 또는 수시경정고지 금액으로만 납부하여야 함</li> </ul>	

53) 이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공한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에 따른 건설현장의 건강보험·국민연금 실무안내' 에서 인용함.

## 2. 적용 기준

### 가. 사업장적용단위

건설공사는 현장별 사업장단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

원수급인, 하도급 사업장별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현장단위로 사업장 분리적용

### 나. 근로자 적용기준

#### 1)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 계약내용이 1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일수·시간 불문함)

- 자격변동기준은 최초 고용일을 취득일로, 사용관계종료(퇴사)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적용

2)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고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포함)

- 근로자 인정요건 :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자격취득시기

최초 근로일부터 1월간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

전월의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이던 근로자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 해당 월의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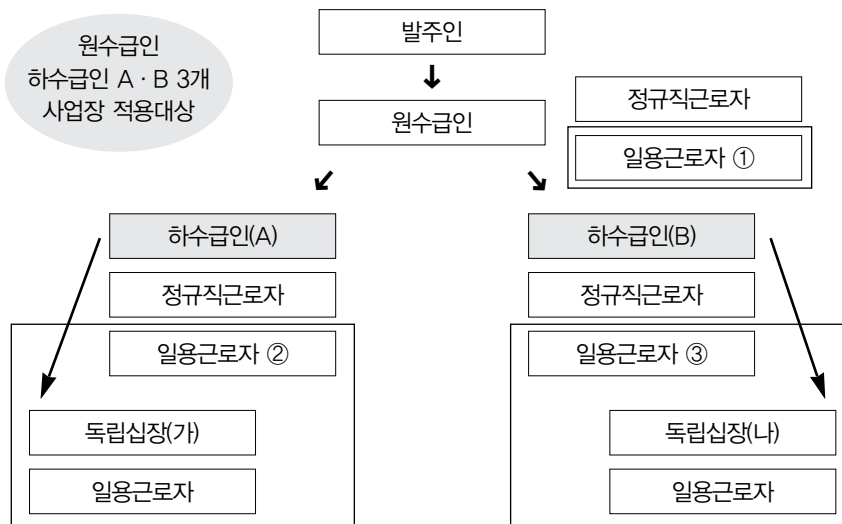
- 자격상실시기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 해당 월의 1일

→ 다만, 해당 월의 최종 근로일까지 연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로 상실 처리할 수 있음

### ㉮ 사업장 적용예시 ㉮



- ▶ 원수급인, 하수급인(A), 하수급인(B) 3개 사업장을 각각 적용하되, 동 건설현장은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적용
- ▶ 정규직근로자는 본사의 사업장에,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적용
  - 독립심장 가, 나와 소속 일용근로자는 하수급인 A, B사업장의 가입자로 적용

### 3. 일용근로자 소득(보수)적용 기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변동된 소득을 적용, 보험료 산정함.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하고, 보험료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월액(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득월액 변경시에는 매월 신고하여야 함.

소득(보수) 적용기준

- 자격취득시 표준소득월액(보수월액) 적용

- 취득월 또는 부과대상 월의 실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 적용기간 : 취득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 가입기간 중의 표준소득월액(보수월액) 적용

- 사업장의 소득월액 변경신청에 의해 신고된 부과 대상월의 실제 소득월액에 따라 적용

- 적용기간 : 소득월액 변경신청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

#### ⊗ 소득(보수)적용 예시 ⊗

“甲”현장	“乙”현장	“丙”현장
근로기간: 2007. 4. 1.~5. 31.	근로기간: 2007. 6. 5.~8. 31.	근로기간: 2007. 9. 1.~10. 31.
소득월액: 4. 1.~4. 30. 180만원 5. 1.~5. 31. 150만원	소득월액: 6. 5.~6. 30. 175만원 7. 1.~7. 31. 145만원 8. 1.~8. 31. 160만원	소득월액: 9. 1.~9. 30. 180만원 10. 1.~10. 31. 120만원

구 분		국 민 연 금	건 강 보 험
甲현장	취득/상실일	2007. 4. 1. / 2007. 6. 1.	2007. 4. 1. / 2007. 6. 1.
	보험료납부	4~5월분(2개월)	4~5월분(2개월)
	소득(보수)월액	2007. 4. 180만원(31등급) 2007. 5. 150만원(28등급)	2007. 4. 180만원 2007. 5. 150만원
乙현장	취득/상실일	2007. 6. 5. / 2007. 9. 1.	2007. 6. 5. / 2007. 9. 1.
	보험료납부	6~8월분(3개월)	7~8월분(2개월)
	소득(보수)월액	2007. 6. 175만원(31등급) 2007. 7. 145만원(28등급) 2007. 8. 160만원(29등급)	2007. 7. 145만원 2007. 8. 160만원
丙현장	취득/상실일	2007. 9. 1. / 2007. 11. 1.	2007. 9. 1. / 2007. 11. 1.
	보험료납부	9~10월분(2개월)	9~10월분(2개월)
	소득(보수)월액	2007. 9. 180만원(31등급) 2007.10. 120만원(25등급)	2007. 9. 180만원 2007.10. 120만원

※ 연금보험료 산정(2007년) : 월 보험료 = 표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 건강보험료 산정(2007년) : 월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4.77%)